



제 1 장 총칙

제정 2008. 1. 15 / 개정 2008. 10. 29 / 개정 2012. 2. 16

제 1 조 (목적)

-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장학사업을 통한 인재육성과 지역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 이 법인은 "재단법인 영암군민장학회"라 한다. (이하 "법인"이라 한다).

제 3 조 (사무소의 소재지)

- 이 법인의 사무소는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교동로89-5번지에 둔다.(개정 2012.2.16)

제 4 조 (사업)

-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 장학사업
 - 지역교육발전지원사업
 - 명문교육성 지원사업
 - 지역교육발전시책 발굴 및 교육시설지원사업
-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행한다.
 - 현금예치에 의한 이자수익사업
 - 기타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목적사업을 행함에 있어 기탁자(10억원 이상)가 원할 경우 수혜자를 지정하여 수여할 수 있으며, 수여시 수여자 명의는 법인과 기탁자가 병기할 수 있다.(개정 2008.10.29)

제 5 조 (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 이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 2 장 재산과 회계**제 6 조 (재산의 구분)**

-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다음 각호의 1항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기부에 의거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세계(歲計) 잉여금 중 적립금
-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 7 조 (재산의 관리)

- 제6조 제3항의 기본 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제 8 조 (재산의 평가)

-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 평가액으로 한다.

● 제 9 조 (경비의 조달방법 등)

-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 수입으로 조달한다.

● 제 10 조 (회계의 구분)

-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 제 11 조 (회계원칙)

-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 제 12 조 (회계년도)

-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 13 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으로써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 금액의 총액이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 제 14 조 (임원의 보수제한 등)

- 제 16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는 보상할 수 있다.

● 제 15 조 (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이 법인의 설립자
 - 이 법인의 임원
 -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 이 법인과 재산상의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제 3 장 임원

● 제 16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 이 법인에는 이사 16인과 감사 2인을 둔다.
- 제 1항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 이사가 된다.
 - 영암군수
 - 영암군의회 의장
 - 전라남도 영암교육장

● 제 17 조 (임원의 임기)

- 이사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 18 조 (임원의 선임방법)

-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 제 19 조 (임원선임의 제한)

- 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6조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 감사는 감사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 제 20 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 이사장은 이사중 호선하며,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 21 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 제 22 조 (이사장 직무대행자의 지명)

-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상임이사가 없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상임이사가 없거나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상임이사 또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제 23 조 (감사의 직무)

-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 이사회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이사회에서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 이사회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 제 4 장 이사회

● 제 24 조 (이사회회의 기능)

-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사업에 관한 사항
 -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 25 조 (의결정족수)

-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 이사회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이사회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 제 26 조 (의결제척 사유)

-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될 때

● 제 27 조 (회의)

- 이사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 정기회는 매년 1월중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 제 28 조 (이사회 소집)

- 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전원이 집회하고 또 2 전원이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사장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재단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여 불법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4항에 의한 이사회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 제 29 조 (서면결의 금지)

- 이사회 의사는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

■ 제 5 장 고문 및 자문위원

● 제 30 조 (고문 및 자문위원)

- 법인의 육성 목적달성을 지원하고 이사회 자문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약간명의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고문과 자문위원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

● 31 조 (상임사무국장)

-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1인을 상임사무국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 상임사무국장의 업무분장과 보수지급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 제 6 장 보칙

● 제 32 조 (정관의 변경)

-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 34 조 (잔여재산 귀속)

-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전라남도교육청에 귀속된다.

● 제 35 조 (시행규칙)

-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 제 36 조 (공고사항 및 방법)

-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전라남도 영암군지역에서 발행하는 지역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 단, 지역신문이 없을 경우 영암군에서 발행하는 소식지등에 공고할 수 있다.
 -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일반인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

- 제 37 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별표1과 같다.

- 부칙

- 제 1 조 (시행일)

-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08년 2월 22일)로부터 시행한다.